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37-10



청렴(韓)세상

# 2010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 제9집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37-10



청렴·세상

2010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

제9집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청렴도를 높여 선진 일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무적인 평가가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65.4%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렴도에 대한 이러한 낮은 평가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저해하고, 우리나라가 국격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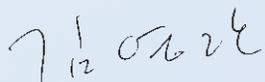
저는 금년 1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는 선도자로서 국민과 함께 부패없는 “청렴한 세상, 깨끗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려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윤리수준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보상 및 포상 등의 사례가 사건별로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이 우리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지침서로 잘 활용되어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나아가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 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일 러 두 기

「2010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은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신고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사례를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으며 의결사항은 신고사건, 행동강령 위반사건, 보호·보상 및 포상금 지급 등 안건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부업무 관련 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 제1장 의결사항

### 제1절 신고사건

#### ■ 2010년 신고사건

01.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13
02. 보육시설원장의 국고지원 보육료 편취의혹	14
03. 前 ○군 포반장의 금품갈취 의혹	15
04. 도로건설 공사 가설 방음벽 설치 등 공사비 편취 의혹	16
05.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의혹	17
06. 초등학교 교장의 예산횡령 등 비리	18
07.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	19
08. ○○연구원 원장의 악품 제조업체와의 유착 및 공공유용 비리 의혹	20
09.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 의혹	21
10. 구청 직원의 탈세 묵인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22
11.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	23
12. 세무공무원의 특별세무조사 빙자 탈세 비호 의혹	24
13. 골프장 승인·등록 등 행정처리 관련 금품수수 의혹	25
14. ○○중앙회 본부장의 비지금 조성 및 횡령 의혹	26
15. 신규 교수 채용 관련 특혜 의혹	27
16. ○○시 수산물도매시장운영법인 선정 특혜 의혹	28
17. ○○시 공무원들의 구거 용도폐지 등 청탁 명목 알선수뢰 의혹	29
18. 쌀소득 보전 직불금 편취 의혹	30
19.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금품수수 및 횡령 의혹	31
20. 고등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시설 보조금 편취 의혹	32
21. 구청 직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의혹	33
22. 교량공사 관련 지장물 보상금 부당집행 의혹	34
23.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은폐 의혹	35
24. 국영기업의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의혹	36
25. 대형국책사업 대안입찰에 의한 예산낭비	37
26.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38
27.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공예산 낭비 의혹	39
28. 지자체 상수도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40

# C O N T E N T S

29. 보험사기방지 소프트웨어 입찰 비리.....	41
30. 시민단체 직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	42
31.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용 관급자재 횡령 등 비리.....	43
32.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 편취의혹.....	44
33.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 사업자의 면세유 편취 의혹.....	45
34. 〇〇지점장의 대출 관련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비리.....	46
35. 〇〇공사 승진시험 비리 의혹.....	47
36. 국립대 조교의 학생 장학금 편취 의혹.....	48
37. 상수도 급수관 개량 공사비 편취 의혹.....	49
38.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인건비 등 부당 수령 의혹.....	50
39. 〇〇협회 전무의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51
40. 항만 준설공사 공사비 허위청구 의혹.....	52
41. e-교과서 불법복제 방지장치 관련 사업비 횡령 의혹.....	53
42. 〇〇연구원 연구비 횡령 의혹.....	54
43.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55
44. 영농조합 농업보조금 편취 및 공무원 묵인 의혹 등.....	56
45. 군청 직원의 민박시설 이전보상금 편취 의혹.....	57
46. 〇〇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재조사 요구.....	58
47. 〇〇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59
48. 〇〇지구 등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60
49. 〇〇시 및 〇〇구 청소년 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61
50. 〇〇번 국도 확장공사 예산낭비 의혹.....	62
51. 위법한 LPG판매시설 변경허가, 특정업체 비호 의혹 등.....	63
52. 자치단체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금품수수 의혹.....	64
53.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	65
54. 〇〇〇센터 수탁연구비 횡령의혹 등.....	66
55. 군청 직원의 석산업체 불법 산지전용허가 묵인 의혹.....	67
56. 동물보호소 위탁사업자 지원금 편취 의혹.....	68
57.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비 부당수령 의혹.....	69
58. 영농조합법인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의혹.....	70
59. 1사1촌 사업 지원금 불법사용 의혹.....	71
60. 〇〇물재생센터 폐토사 처리 용역 업체의 폐토사 처리비 편취 의혹.....	72
61. 하수관거정비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73
62. 고속철도 궤도공사 감리용역 입찰담합 의혹.....	74

63. ○○사업기반망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	75
64. 선박용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	76
65. 국립대학 교수의 국고지원 연구비 횡령의혹 .....	77
66.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 .....	78
67.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감리원 부당 교체 의혹 .....	79
6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등 .....	80
69. 하천제방 공사용 관급자재 횡령 의혹 등 .....	81
70.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마감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의혹 .....	82
71. ○○공예공방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	83
72. 하천제방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 .....	84
73. 국립대 조교수의 직권남용 및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	85
74. 백린연막탄 납품관련 수락시험 비리 의혹 .....	86
75. 국립병원 직원의 청소용역 계약 관련 배임수재 등 의혹 .....	87
76. 교육청 흡연측정기 납품 관련 부패 의혹 .....	88
77.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편취 의혹 .....	89
78.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	90
79.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	91
80.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등 .....	92
81.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횡령 의혹 등 .....	93
82.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횡령 의혹 .....	94
83. 새일여성인턴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	95
84. 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 관련 공동주택 보조금 편취 의혹 .....	96

■ 이첩사건 처리결과와 추록

01.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	99
0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	100
03.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	101
04.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	102
05. 준설사업 계약 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	103
06.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	104
07. 국립○○병원 영상필름 판독업무 위탁 비리 의혹 .....	105
08.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	106
09. 시 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 낭비의혹 .....	107
10. 공무원 등의 쌀 직불금 및 폭설피해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 .....	108

# C O N T E N T S

11.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109
12.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110
13. 건설폐기물 불법성도 관련 묵인 의혹	111
14.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	112
15. 공중보건의 등 의약품 사례비 수수의혹	113
16.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행위 등 묵인의혹	114
17. 前 한국○○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115
1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116
19.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117
20.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	118
21. 고속정 발전기 납품비리 의혹	119
22. 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120
23.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121
24. 도로 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122
25. 표고목 구입비 등 국고지원 보조금 편취 의혹	123
26.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124
27. 폐기물처리 용역비 허위청구 편취 의혹 등	125
28.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126
29.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127
30.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128
31.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129
32. 공무원의 조세포탈 은폐 의혹	130
33.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의 용역관련 뇌물수수 의혹	131
34. 공무원들의 무허가 축사 불법추진 등 의혹	132
35. 정부출연 연구과제 출연금 횡령의혹	133
36. 세무공무원들의 주식 변칙증여관련 탈세 사실 묵인 의혹	134
37. ○○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135
38.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136
39. 도로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반입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137
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 비리 의혹 등	138
41. 정부지원 연구과제비 횡령 등 의혹	139
42. 지역SW특화육성 지원 사업 관련 예산낭비 의혹	140
43. 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교부·편취 의혹	141
4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지원금 횡령 등 의혹	142

45.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편취 의혹	143
46.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144

## 제2절 신고자 보호

01. 「O군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건 관련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147
0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건 관련 신분 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	148
03.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신고」관련 신고자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149

##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 보상금 지급

01.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5
02.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 매각」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6
0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7
04.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8
05. 「상수도관 납품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9
06.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0
07. 「OO의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1
08.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2
09.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3
10. 「OO법인 대표이사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4
11.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5
12. 「임산물 보조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6
13. 「OO시설 공사납품 관련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7
14. 「OO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8
15. 「OO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9
16. 「OO연구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0
17. 「임야 및 농지에 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1

# C O N T E N T S

18.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납품대금 편취」건 보상금 지급.....	172
19.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3
20.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4
21.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5
22. 「출장비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6
2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7
24. 「OO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8
11. 「고속정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9

## ■ 포상금 지급

01.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3
02.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4
03.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5
04.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6
05.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7
06.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8
07.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9
08. 「정부보조금 부당지급」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90
09. 「OO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91
10. 「OO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92

## 제4절 기타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0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	195
---------------------------	-----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0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	196
0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	197

## 제2장 보고 및 의결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203

### 부 록

■ 법령·예규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13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0

3.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229

4.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 241

5.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 249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265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 277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278

■ 부패행위 신고안내 ..... 279

■ 공익신고안내 ..... 280



# 제1장 의결사항

## 제1절 신고사건

- 2010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제2절 신고자 보호

##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제4절 기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제1절 신고사건

- 2010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10-1호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복지법인과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5명을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법인 산하 3개 복지시설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복지법인 본부와 의료재단 산하 병원에 근무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횡령과 산림 훼손 등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복지시설 운영비 불법 전용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북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 횡령 및 산림 무단훼손 혐의 등이 확인되어 3명 약식기소
  - ※ 통보일자 : 2010. 6. 28.
- ○○북도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 6명 훈계조치
  - ※ 통보일자 : 2010. 6. 2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호

### 보육시설원장의 국고지원 보육료 편취의혹

1분과위원회(2010. 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광역시 소재 보육시설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에서 보육 받지 않는 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등재 하거나 퇴소한 원생을 퇴소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육료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고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원 및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정원을 초과하여 보육하였음에도 지원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육료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2,02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 통보일자 : 2010. 3. 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호

## 前 ○군 포반장의 금품갈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하사관이 포반장으로 복무하면서 부하 병사들에게 군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08. 3.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관심병사를 풀어주고 군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해 줄 것이 다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 일부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4. 2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9호

### 도로건설 공사 가설 방음벽 설치 등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도로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으로서 가설 방음벽 등의 공사를 하면서 일부만 설치하고도 설계내역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고, 발주기관 직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과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공사대금 5,900만 원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입건유예  
※ 통보일자 : 2010. 7. 2.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공사비 9,100여만 원 감액조치하고 해당 공사 직원 3명 문책 요구  
※ 통보일자 : 2010. 4. 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호

## ○○어촌계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0. 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지방자치단체 수산담당 공무원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감독해야 함에도 어촌계장 등과 담합하여 묵인하거나 면세유를 개인 승용차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어촌계장 등 어민들은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면세유를 수급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시 공무원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은 사실을 묵인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면세유를 주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 어촌계장은 어민들이 면세유를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면세 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면세유를 불법유통 시킨 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3,840만 원 상당 면세유 편취 혐의가 확인되어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7. 2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1호

## 초등학교 교장의 예산횡령 등 비리

1분과위원회(2010. 2.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초등학교 교장 등이 중고가구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학교예산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거래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거나, 포상 추천을 임의로 하고, 다면평가 순위를 조작해주고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가구를 구매하면서 예산을 횡령하고, 공사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다면평가 조작과 포상 추천 위반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교육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수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학교장이 중고가구 구입 후 8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업자로부터 50만 원 수수하였으나, 반환 등 정상참작 하여 입건유예
    - ※ 통보일자 : 2010. 6. 11.
-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학교장이 47만 원을 횡령하여 회수와 함께 감봉 3월, 교감과 행정실장 각 주의 및 경고 조치
    - ※ 통보일자 : 2010. 6. 1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3호

##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0. 2.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1.경 ~ 2009. 12.경 중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72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산장비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고,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하여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 횡령하는 등 6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0. 7. 2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와 설명요구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4호

### 〇〇연구원 원장의약품 제조업체와의 유착 및 공공유용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0. 2.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계약상 연구개발과제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공동연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식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관련 기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당 지급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7. 3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9호

##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0. 3. 1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산업기술개발 출연금으로 비행기 부품 제조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 사장 명의의 공문서와 ○○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식경제부 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출연금 편취의혹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고, 출연금 전액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0. 10. 2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0호 **구청 직원의 탈세 묵인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0. 3.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세 탈세 혐의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대표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횡령하거나 부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및 회사 공금 횡령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탈세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세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뇌물 2,700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 2명 구속기소, 업체 임원은 뇌물공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6. 3.
- 국세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1호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0. 3.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년 ○○부로부터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중 일부 자금을 비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들이 검사장비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장비구입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고 ○○부 등 관련 공무원들도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가 확인되어 관련자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6. 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2호

## 세무공무원의 특별세무조사 빙자 탈세 비호 의혹

2분과위원회(2010. 3. 1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前건설회사 임원인 피신고자가 2005년 회사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거쳐 소액만 부과 받고, 담당 세무공무원은 대가로 피신고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탈세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회사와 세무공무원 간의 뇌물공여 및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한 의혹이 있어 관련자들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처분  
※ 통보일자 : 2011. 1. 1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3호

**골프장 승인·등록 등 행정처리 관련  
금품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0. 3.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고자들은 2003. 7. ~ 2009.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협의절차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십 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필요성이 있고 회사부도 후, 이해관계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관련업체 대표 등의 사기,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5명

※ 통보일자 : 2010. 7.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7호

## ○○중양회 본부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1.경부터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조물책임보험사업을 담당하면서 광고대금을 지급받아 사업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양회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리  
※ 통보일자 : 2011. 2. 1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28호

## 신규 교수 채용 관련 특혜 의혹

제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 교수들과 교무처 직원으로,
  - 교수 3인은 2009년도 1학기 신규교수채용 심사에서 실기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을 무산시킨 A를 2학기 채용심사에서 합격시켜 채용한 특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1학기 신규교수채용 심사에서 실기능력 미달을 이유로 부적격 탈락하였던 A(1학기 심사 당시 2순위 자)를, 하반기 심사 시에는 경쟁자들보다 월등하게 실기능력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자”로 평가하여 면접대상자로 추천하였고,
  - 학과교수 전원(5명)이 서명한 학과회의록을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자 3인만이 서명한 회의록 제출하여 심사에 반영
- 또한, 채용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 면접위원으로 피신고자 중 2인 추천, 접수기한 도과 후 제출된 부적격 서류 심사 등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이첩 필요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내사자 3명은 입건유예 및 6명은 증거불충분하여 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10. 10. 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고, 행동강령 위반통보

분과2010-29호

## ○○시 수산물도매시장운영법인 선정 특혜 의혹

제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공무원, 산하 공직유관단체 상임이사들로,
  -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선정 시 부적격 업체 A를 적격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선정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시 공무원들은 업체 A가 접수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 사전 계획에 없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A를 적격한 것으로 심의·보고토록 하고, 임의로 서류보완 기회를 부여
- 또한, 업체 A가 심의가 임박한 시기에 심의위원 소속의 금융기관에 거액을 예치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이첩 필요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내사종결  
※ 2010. 7. 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고, 행동강령 위반통보

분과2010-30호

## 〇〇시 공무원들의 구거 용도폐지 등 청탁 명목 알선수뢰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〇〇시 공무원들로 민간인에게 지목이 구거용지인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용도폐지 되도록 하고 수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약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금이동이 확인되었고 해당 토지가 구거용지인 점에서 알선수뢰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뇌물 1억 원 수수 및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1명

※ 통보일자 : 2010. 5. 1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1호

### 쌀소득 보전 직불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실제 논 농사를 짓지 않고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한 의혹이 있고, 감독공무원은 주민들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하였음에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쌀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감독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 이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주민들의 편취사실이 확인되어 약 7,894만 원 환수, 3년간 지급등록 제한, 감독공무원 업무처리 소홀에 대하여 5개 기관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10. 7. 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2호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금품수수 및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공무원으로 추모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1,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시공사와 공모하여 건설자재 가격을 부풀려 지급하고 시공사로부터 2억 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뇌물 수수 및 공사비 횡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2,600만 원 뇌물수수 및 2억 2,400만원 공사비 편취 혐의가 확인되어 4명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5.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3호

### 고등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시설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은 2008. 5. ~ 12. 학교 내 운동시설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구청으로부터 학교운영시설 보조금 5,2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편취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시 교육청으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행정실장의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7. 2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4호

**구청 직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선정과 관련 하여 특정업체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부서 직원 으로부터도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등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서울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10. 29.
- ○○구 조사 결과, 담당공무원의 향응수수 혐의가 확인되어 징계  
※ 통보일자 : 2010. 11.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5호

## 교량공사 관련 지장물 보상금 부당집행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남도 ○○군 △△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군에서 작성한 보상금 지급조서의 실제 보상면적과 공부상 건축 연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하게 보상금을 집행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보상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남도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훈계조치
- ※ 통보일자 : 2010. 7. 2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6호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은폐 의혹**

1분과위원회(2010. 4.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시 ○○구 소재 병원 원장과 건물주는 무단으로 복층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고, 감독관청의 공무원은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하게 처리하여 은폐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물 불법 용도변경 및 공무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신고내용의 상당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 주의 조치, 병원장 및 건물주 건축법 등 위반으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0. 6.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8호	<b>국영기업과 공공단체의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의혹</b>
1분과위원회(2010. 4.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사는 2007년 이후 폐전선 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시장가격의 1/8 정도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공공재산을 낭비하고, 허위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한 ○○회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한 이익을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확인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으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 통보일자 : 2010. 6. 2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38호

## 대형국책사업 대안입찰에 의한 예산낭비

1분과위원회(2010. 4.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5년~2009년경 한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확장 등 30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원안설계(기본 +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일반 가격경쟁(최저가 낙찰제)으로 발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 낙찰률이 20~30% 높아져 수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케 하였다는 취지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또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보완을 위해 해당기관으로 참고자료 통보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및 국토해양부 기관송부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0. 12. 30.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통보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42호

##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제1분과위원회(2010. 5.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수로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 협조·격려 명목의 현금 제공, 비서실 직원 의복 구입 및 명절 격려금 지급, 개인용 자전거 구입 등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격려명목 등 현금을 지급했다는 다수의 상대방이 수수 혐의 부인
- 비서실 직원의 개인용 의복 구입, 예산의 현금인출을 통한 사적사용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회계서류) 허위작성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 필요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하여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7. 13.
- ▶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분과2010-75호)

분과2010-43호

##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공예산 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0. 5.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와 BTO방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 퇴비성 비료를 생산·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농작물에 사용 불가능한 비료를 생산하여 쓰레기장에 폐기하고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을 낭비하게 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보고에 의한 예산낭비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중
- ▶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10-44호

## 지자체 상수도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5.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에서 발주한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에서 처리하고도 원거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부풀려 공사비 약 3,8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등 다른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중
- ▶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10-46호

**보험사기방지 소프트웨어 입찰 비리**

2분과위원회(2010. 5.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소프트웨어 물품구매 입찰을 하면서 특정 하도급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경쟁업체에는 자료열람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게만 설계서 파일을 제공하는 등 입찰관련 비리가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물품구매 입찰을 하면서 특정 하도급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고, 위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입찰공고 업무 관련하여 제도개선  
※ 통보일자 : 2010. 7.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47호	<b>시민단체 직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b>
2분과위원회(2010. 5.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시민단체 직원들로 노동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원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환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사기 혐의가 확인되어 3명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10. 11. 8.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3,400만 원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 ※ 통보일자 : 2010. 11. 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49호

##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용 관급자재 횡령 등 비리

1분과위원회(2010. 5.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건설업자가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고, 감독공무원은 관급자재 횡령 의혹에 대하여 수차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불법 매각해 횡령한 의혹이 있고,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건축업자, 현장소장이 철근 4톤을 반출하여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 기소

※ 통보일자 : 2010. 6. 3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0호	<b>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 편취의혹</b>
------------	-------------------------

1분과위원회(2010. 5. 17.)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도 ○○시 소재 청소업체 대표인바, ○○시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력을 적게 투입 하고, 친·인척명의를 이용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은 운전원 등의 인력이 1명씩 적게 투입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신고자의 가족 및 친인척 명의를 임금대장에 등재하여 청소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약 4,375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 ※ 통보일자 : 2010. 11. 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1호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 사업자의  
면세유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5.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허위로 어선출항신고를 하여 민간어통 신고소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협으로부터 자신의 주유소에 면세유를 공급받아 시가와의 차액 8,700만 원에 상당하는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면세유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10. 2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2호	<b>○○지점장의 대출 관련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비리</b>
1분과위원회(2010.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중앙회 지점장과 직원은 상가건축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출 편의 대가로 골프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서 형사, ○○국장, ○○청 직원 등은 상가 건축 관련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0. 12. 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3호

## ○○공사 승진시험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0. 5.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 1. 경 실시된 ○○ 공사 2급 사무직 승진 선발을 위해 필기시험을 시행하면서 ○○ 고시학원 교재에서 시험문제 총 50 문제 중 22문제를 동일하게 베껴 출제하고, 위 출제정보 등을 특정인에게만 사전에 알려주거나 유출시킨 비리의혹이 있다는 취지임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승진 시험 문제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0. 8. 2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5호	<b>국립대 조교의 학생 장학금 편취 의혹</b>
------------	-----------------------------

1분과위원회(2010. 6. 7.)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국립대 조교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과 조교들에게 장학금이나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속여 장학금을 돌려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국립대 조교로서 학생들을 속여 장학금을 편취한 사실 등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 대학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300만원을 편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조교 보조에게 수당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입건유예 처리
    - ※ 통보일자 : 2010. 7. 26.
  - ○○ 대학교 조사결과, 피신고자 경고조치
    - ※ 통보일자 : 2010. 8. 2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6호

**상수도 급수관 개량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역시가 지원하는 아파트 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 세대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전체 세대가 공사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4,5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 및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허위작성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공사대금 4,493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기소 송치하고, 관계 공무원 등 6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 통보일자 : 2010. 9.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7호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인건비 등 부당 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6.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폐기물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위반하여 구청 승인 없이 소속 직원의 직급을 상향시켜 인건비를 편취하고, 구청장은 인건비 위 부당 수령 사실을 알고도 환수조치 없이 승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주의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 통보

※ 통보일자 : 2010. 9. 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58호

## ○○협회 전무의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6.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으로부터 지원받은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숙박비, 식비, 출전비 등을 부풀려 정산하여 약1,2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금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출전비 640만 원 횡령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7. 2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0호 **항만 준설공사 공사비 허위청구 의혹**

1분과위원회(2010.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로부터 항만 준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방법을 변경하고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고 발주청의 담당자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 및 감리원의 허위 보고에 공사비 과다 수령, 발주청의 묵인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담당직원의 감독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주처 공사 담당 직원 2명 문책(경고, 주의)조치하고, 공사비 5억 9,700만원 감액 조치
- ※ 통보일자 : 2010. 9.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3호

**e-교과서 불법복제 방지장치 관련  
사업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6.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가 주관하는 e-교과서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CD 불법복제방지장치(DRM) 설치를 담당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공모하여 DRM 설치비용을 부풀려 계약한 후 되돌려 받아 수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업비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1명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2. 1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4호	<b>○○연구원 연구비 횡령 의혹</b>
------------	------------------------

1분과위원회(2010. 6. 23.)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저압 전기기기 고조파에 관한 연구과제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노트북 등을 횡령, 조사활동비와 직책 수당을 기본급에 허위로 포함시켜 편취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고가의 개인용 선물을 구입하는 등 도합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약 2,263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1명 벌금형, 1명 기소유예, 관련자 2명 기관 징계조치
  - ※ 통보일자 : 2011. 2.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8호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7.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학원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역실업자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훈련비 등 수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역실업자훈련비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감독공무원의 묵인행위 및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주관 훈련비 편취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수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훈련비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학원생 412명은 교통비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여,
  - 학원장 구속기소, 교통비 반납자 338명 기소유예, 미 반납자 31명 불구속 기소, 소재불명자 42명 내사중지
- ※ 통보일자 : 2010. 12. 2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69호 **영농조합 농업보조금 편취 및 공무원 묵인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7.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인증원 직원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허위로 인증하고, 전 ○○시장 등은 미곡처리장 건립 등 보조금을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 산지전용허가 및 보조금 지원 재산의 매각행위를 묵인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부당인증, 보조금 지원 특혜 및 직무유기 및 보조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중
- ○○남도 조사 결과, 관련 공무원 5명 훈계, 주의 1명  
※ 통보일자 : 2010. 11.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0호      **군청 직원의 민박시설 이전보상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7.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설철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상금 수급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의 절반을 돌려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의 보상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상금 편취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9. 1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5호

###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재조사 요구

제2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위원회는 ○○군수가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유관기관 공무원 현금 등 지급, 비서실 직원 의복·자전거 구입 등에 대하여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첩
- 허위영수증 첨부사실을 사후에 인지했다는 피신고자의 주장 및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등의 포괄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혐의 없다’는 수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조사 요구 여부 심의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없고, 비서실 직원의 개인용 의복·자전거 구입 등은 명백한 예산의 사적사용(횡령)에 해당
- 또한, 현금 등 제공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없어 예산의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 요구 필요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에 재조사 요구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재조사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12. 21.

##### ▶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6호

## ○○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구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해 오면서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용역비를 편취 하였고, 감독관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이 상당하고, 현장감독 등 관련자들의 묵인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용역비 12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3억 8,000만 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되어 업자 등 2명 구속기소  
※ 통보일자 : 2010. 11. 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7호

## ○○지구 등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등에서 발주한 ○○지구 등 8개 택지조성 지구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편취하고, 현장 감독관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및 감사, 제도개선이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1. 6. 7.

-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공사감독 직원 2명 주의조치, 제도개선

※ 통보일자 : 2011. 5. 1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8호

## ○○시 및 ○○구 청소년 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및 ○○구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시설 운영하면서 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공사비를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약 7,900만 원을 편취하고 법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관련 공무원은 공사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10. 2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79호

## 〇〇번 국도 확장공사 예산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건설업체 대표는 〇〇번 국도 구간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아 편취하고 책임 감리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10. 11. 5.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관리감독 소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없음
  - ※ 통보일자 : 2010. 5.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0호

**위법한 LPG판매시설 변경허가,  
특정업체 비호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군은 군내 LPG판매소가 불법으로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허가변경 과정에서 군 조례를 위반하는 등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이들의 불법사실을 알았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가스용기 보관상태 등 감독태만 및 허가변경 관련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감독 소홀 및 위법한 권한 행사 등이 사실로 확인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11. 1. 6.

**▶ 위원회 검토의견**

- 이의신청에 따라 설명요구 하고 이의신청 내용은 기각

분과2010-81호

## 자치단체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금품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3. 9.경 ~ 2009. 11.경 경기 소재 ○○ 선교회 소유 종교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주고, 형사사건을 해결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신고자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토지용도 변경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하여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5,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10. 2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2호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청소원 임금을 적게 지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위 사항에 대해 계약해지나 부정당업자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 해주고, 재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남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남도 조사결과, 청소용역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기관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0. 8. 3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3호      ○○○센터 수탁연구비 횡령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8.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0년 ~ 2009년경에 제약사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상연구 관련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해 오면서, 과제별 연구비의 약 10% ~ 16%에 해당하는 연구 간접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연구수탁 현황 및 정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 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1. 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6호

**군청 직원의 석산업체 불법 산지전용허가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10. 8.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군청 공무원들이 지역 석산업체가 기존 석산개발지역 인접 구역에서 버섯재배사 건립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 목적과 달리 토석만 채취 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부당하게 연장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청 공무원들의 석산업체의 불법 토석채취 행위를 묵인 및 산지전용허가 부당 연장 등 석산업체 대표와의 유착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일자 : 2010. 12. 3.

- ○○북도 조사 결과, 산지전용허가 부당 연장 혐의가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 등 5명 훈계 및 주의조치

※통보일자 : 2010. 12.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7호

## 동물보호소 위탁사업자 지원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0. 8. 2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동물병원장 등이 ○○광역시로부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 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탁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원금 편취 의혹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8,3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4명 송치
- ※ 통보일자 : 2010. 12.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8호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비 부당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0. 8. 2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고등학교 교사가 방과 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도 정상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강사비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학교 축제를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5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 한 결과, 피신고자가 방과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비를 허위 청구하여 수령한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도교육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강사비 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되어 전액 회수하고 피신고자 등 관련자 3명 경고 및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0. 10.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89호	<b>영농조합법인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의혹</b>
2분과위원회(2010. 8.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청에서 지원하는 감 가공공장을 건설하면서 허위 정산서류 등을 ○○군청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건설하고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3억 1,400만 원을 용도외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10. 12. 3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90호

**1사1촌 사업 지원금 불법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0. 8.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마을 前 이장으로 1사1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방갈로 2동을 건축신고도 없이 사업 신청과 다른 장소에 건축하여 군청으로부터 철거지시를 받는 등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농협 지원금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중양회 이첩, 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중양회 조사결과, 자금 집행의 적정성 심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등 5명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0. 1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94호

### ○○물재생센터 폐토사 처리 용역 업체의 폐토사 처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9.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하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용역을 하면서 ○○물재생센터 내에서 계근한 후, ○○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시 계근장으로 준설토를 신고와 계근 하는 방법으로 처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용역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련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통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준설토 용역업체 대표 등 8명의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물재생센터 직원 1명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각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1. 5.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96호

## 하수관거정비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1분과위원회(2010. 9.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7. 2.경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하수관거정비 민자 사업 평가위원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 제공해주었고,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로부터는 공사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중

분과2010-97호

## 고속철도 궤도공사 감리용역 입찰담합 의혹

1분과위원회(2010. 9.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공단이 발주한 궤도부설공사 감리용역 입찰 등에서 투찰가를 상대업체에게 알려주어 입찰담합을 하였고, 공단 직원은 ○○고속철 책임감리 용역 감리단장의 경력을 속여 제출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찰담합 의혹과 감리원 경력을 속여 제출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공단 직원의 묵인 의혹에 대하여는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1. 2. 9.
-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공단 담당직원 주의조치 하고 허위 경력을 제출한 감리원은 과태료 부과조치  
※ 통보일자 : 2011. 2.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98호

## ○○사업기반망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0. 9.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 7.경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사업 기반망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하여 고급 호텔 식사권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 선정 된 후, 컨설팅 사업 등 용역 과제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 유출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평가위원에게 금품 (호텔식사권 등)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12. 3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0호

## 선박용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9. 2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재비를 기술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 1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 하고, 관련 공무원은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피신고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1명 입건유예  
※ 통보일자 : 2011. 3. 2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1호

## 국립대학 교수의 국고지원 연구비 횡령의혹

1분과위원회(2010. 9. 2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지방 국립대학교수들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하면서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관리 하면서 참여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약 1억 4,2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원 인건비 약 3억 2,618만 원을 용도외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입건 유예
- ※ 통보일자 : 2011. 2.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2호

##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

제1분과위원회(2010. 9. 2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회계담당 공무원들로 토너 등 소모성 전산용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 A로부터 허위견적서를 받아 차액을 착복하거나 납품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시와 업체 A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분석 결과,
  - 근무현원이 지속 감소하였고 소모성 전산용품의 구입단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구입총액은 급증하였으며,
  - 특히, 구매총액의 80% 이상을 업체 A로부터 구입하는 등 불법 결탁 가능성이 높음
- 실제 관내 △△읍사무소 직원들이 토너를 구입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업체 A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사례(일명 카드깡)도 확인되어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이첩 필요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8억원 횡령 혐의로 8명 기소, 46명 내사종결(기관 징계 요구)
- ※ 통보일자 : 2011. 6. 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고, 행동강령 위반통보

분과2010-105호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감리원 부당 교체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0.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시 공무원 등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묵인하고, 시행사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하는 책임감리원 교체를 요청받고 감리사무소에 교체지시 하여 시행사가 부실 설계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지시 및 사업변경 승인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북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북도 조사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홀 사실이 확인되어 4명 주의, 1명 훈계 조치

※ 통보일자 : 2010.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6호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0.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 등의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서 확인 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사업 참여 근로자를 허위등재하여 인건비를 돌려받는 등 정부지원금 총 3억 3,476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0-107호

## 하천제방 공사용 관급자재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0.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하천 제방공사(사업비 5억 6,260만원) 하도급 업체 작업 반장으로서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관급자재, 철근 등을 빼돌리고,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걸쳐 위와 같은 민원을 제보 받고도 회수나 고발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9명을 직무유기, 절도, 하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1. 7. 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08호

##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마감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0.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사 담당공무원으로서 마감재가 추모공원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교체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도록 설계변경 해주고,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신규 비목의 단가를 높게 결정하여 시공사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중

분과2010-109호

## ○○공예공방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0.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실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등 위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장비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행위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수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관광진흥기금 8,62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2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1. 7. 27.
- ○○도 조사결과 :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 1명, 훈계 2명  
※ 통보일자 : 2011. 8. 1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12호

## 하천제방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0. 10.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 기존제방 보강 공사에 토취장에서 채취한 순성토를 운반하여 사용하여 시공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사토장에 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책임감리원 및 ○○국토관리청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부적절한 시공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공사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3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6. 1.

- 국토해양부 조사 중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16호

국립대 조교수의 직권남용 및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1.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켰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졸업 작품 제작 관련 학교 지원금을 횡령하고 학생들 졸업작품을 도용하여 각종 디자인전에 출품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용역 인건비 및 학교 지원금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디자인 도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중

분과2010-117호

### 백린연막탄 납품관련 수락시험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1.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 12.경 ~ 2009. 3.경 (주)○○화학에서 납품해야 할 백린연막탄에 대한 수락시험을 하면서 임의로 합격시켜주고, 이미 개발된 폭발압접기술을 민·군 겸용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출연금 약 22억 원을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방위사업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방위사업청 조사결과, 국방규격 제도개선 및 기관주의통보
  - ※ 통보일자 : 2010. 12. 31.
- 경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1. 2. 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18호

**국립병원 직원의 청소용역 계약 관련  
배임수재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1.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국립○○○병원 총무팀 직원은 병원 청소용역 계약 관련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허위 청소인력 투입을 묵인하여 해당 업체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토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배임증재,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3명

※ 통보일자 : 2011. 3. 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19호

## 교육청 흡연측정기 납품 관련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1.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흡연측정기 납품업체 대표가 교육청에서 공고한 흡연측정기를 낙찰받기 위해 제품 성능표를 변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관련 공무원은 검수 및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제품 성능표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에 대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교육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흡연측정기 납품업체 대표 등 4명이 3,57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3. 14.
- 교육청 조사결과, 편취대금 3,753만원 전액 반환청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 통보일자 : 2011. 4. 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20호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1.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재단 직원으로 사또복장으로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수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약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11. 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22호

##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2.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공모한 ○○팀장직위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하고, 팀원들의 출장여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원장에게 상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북도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출장비 등을 허위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어 팀장 2명 면직, 업무담당자 3명 주의 및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1. 8. 29.
- 경찰청 수사결과, 예산손실은 확인되었으나 형사처벌 곤란하여 관계 기관 통보 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1. 4. 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23호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2.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중소기업 대표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면서 거래업체에 허위로 물품구입비 등을 입금하였다가 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1억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2명
- ※ 통보일자 : 2011. 3.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27호

##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2.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를 기술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국책과제 연구사업을 하면서 자재비를 허위청구 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 1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관련 공무원은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4명 불구속 기소, 1명 입건유예
- ※ 통보일자 : 2011. 3. 2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28호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0. 12.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12. ~ 2011. 9.까지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개발’을 위해 (유)○○○를 설립하고 정부출연금 등 100억 원으로 연구개발하면서, 자신의 회사 정책용역 업무에 참여하고도 위 연구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2억 5,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횡령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0-132호

###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2.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소속 회원들의 문화재전승 보조금 수급계좌를 총괄 관리하면서 ○○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보조금법 위반 등 환수조치를 위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1. 3. 8.
- ○○시 조사 결과,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1. 3. 3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33호

## 새일여성인턴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2.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새일센터를 통해 실업여성을 채용한 기업체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스스로 취업한 직원들이 마치 새일센터를 통해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새일여성인턴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들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지원금 회수나 행정조치 등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보조금 신청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사업목적이 달성 된 점을 감안하여 과다 지급된 지원금 환수와 제도개선 검토
- ※ 통보일자 : 2011. 2. 2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0-134호

### 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 관련 공동주택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0. 12.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하수관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 편취 혐의가 확인되어 4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3.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08-53호

##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8. 10. 6.)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역률관리용 전력량계 보급을 추진해 오면서, 특정업체만 위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참여시켜 사업자로 선정하고 또 다른 납품 계약에서는 표준규격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주고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정업체에게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이익을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금품 수수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7. 2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0호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0.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 교수로서 실제 개발하지 않은 교재를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개발한 것처럼 허위 교재개발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의를 하지 않고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교재개발 서류를 허위작성 하여 900만 원을 입금 하였다가 되돌려 받고, 강의료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1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09. 6. 26.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1명 정직, 2명 불문경고, 4명 주의  
※ 통보일자 : 2010. 4. 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71호

##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제2분과위원회(2008. 10.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인상·고시하면서 관련 근거의 충분한 검토 없이 혈액수가를 결정·고시하고,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를 기망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인상근거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총 137여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감사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0. 7. 19.
- 보건복지가족부 조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9. 6. 1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7호

##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2. 3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마을이장이 농촌전통체험마을 및 주변환경조성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하였고,
-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법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조사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 등 4명이 6,700만 원을 편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09. 9. 30.
- ○○북도 조사결과, 기관주의 및 시정조치, 4명 훈계, 2,000만 원 회수조치  
※ 통보일자 : 2009. 12. 2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9호

**준설사업 계약 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2. 3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모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중 당초 사업자와 계약 물량을 준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 5.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여 준설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결과, 관련기관의 업무 부적정 처리 사실이 확인되어 기관주의  
※ 통보일자 : 2010. 6.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호

##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맹지에 대한 건축신청과 관련하여 도로지정 없이 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공부작성과 공시지가 산정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결과, 부패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종결 처분  
※ 통보일자 : 2010. 5. 2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호

국립○○병원 영상필름 판독업무 위탁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 ○○병원 원장 및 방사선 영상필름 판독업무 외주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주위탁사업 대상자를 미리 내정해 놓고 입찰가격을 알려주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과 판독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체에 이익을 주어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패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각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병원장이 사업자 선정 시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실에 통보 (의원면직)  
※ 조사결과 통보 : 2010. 6. 30.
- 감사원 조사결과, 피신고자 의원면직으로 종결처리  
※ 조사결과 통보 : 2010. 7. 1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호

##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력)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건축물표시(용도)란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건축물대장을 임의변경 입력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통보일자 : 2010. 1. 2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5호

## AI 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 낭비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AI 발생지역 배수관과 개인 급수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감독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애초 설계와 다르게 부실한 공사를 하고 허위로 준공 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발주처의 설계와 달리 시공하고도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허위 준공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 대금을 과다지급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및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7개 시공업체가 8억 2,000만 원 공사비 허위청구, 관련 공무원 6명 허위준공 승인 혐의인정 등 18명 불구속  
※ 통보일자 : 2009. 10. 5.
- ○○북도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 2명 중징계, 경징계 1명, 훈계 2명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6호

### 공무원 등의 쌀 직불금 및 폭설피해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쌀 직불금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이장 등으로서, 공모하여 농지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쌀 직불금과 정부지원 소석회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되는 폭설 피해보상금을 축산 농가가 아닌 자에게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축산농가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설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1. 1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3호

##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고, 사업자가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오염된 폐 흙과 돌로 원상복구 하였음에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허위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이득을 준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무 유기 의혹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부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1. 1.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4호

##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내 경지정리 및 관개수로가 정비된 농업진흥구역내 골재채취를 허가하고, 애초 지정된 토취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원상복구 하였는데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한 것처럼 보고 하는 등 직무유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비리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고, 직무소홀 혐의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현장이 원상복구된 지 1년이 넘었고, 수사기관에서 동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결  
※ 통보일자 : 2010. 8. 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5호

##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관내 농지를 사토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3~4m 이상 높이로 메운 사실을 알고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행위 및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로 인정하여 마치 허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범규 위배가 명백함에도 출장보고 및 민원처리 협의의견 통보 시 적법한 것으로 허위보고 함이 인정되어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무단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주의조치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10. 8. 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6호

##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공장신설승인 신청지가 불법 형질변경 되어 원상복구 및 고발을 해야 함에도, 공장신설 승인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고, 부지가 농업용 저수지 근거리에 소재하여 공장신설승인이 불가함에도 승인 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원상복구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신설을 승인해 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남도 조사결과 : 관련자 2명 주의, 감면받은 농지보전 부담금 1억 원 재부과 처분  
※ 통보일자 : 2009. 6. 24.
-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1. 1.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7호

**공중보건의 등 의약품 사례비 수수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국 보건소 공중보건의들로, 고혈압 치료제 등 17개 약품을 특정 업체 회사로부터 구매하고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사례비로 매월 또는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9. 9. 9.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5.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8호

##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행위 등 묵인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개발행위 및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들인 바, 건설업체가 관내 농지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불법 성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정업체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이익을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해당 필지의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자의 민원을 묵살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원 및 수사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및 경찰청으로 송부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형질변경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와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주의조치토록 통보
- ※ 조사결과 통보 : 2010. 8. 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6호

**前 한국〇〇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정부 출연금 등을 관리하던 중, 재단 복지센터 건물 부지 매입비 과대계상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일부 예산을 횡령하고, 공단 사외이사과 노조연맹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복지센터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등 부패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 등이 노조자금 약 7억 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1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 조사결과 통보 : 2010. 12.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3호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9. 6.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노동부 시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친분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확인됨에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노동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노동부 조사결과, 허위서류 작성 및 영업활동 일지 부적정 관리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약정 해지

※ 통보일자 : 2010. 4. 1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1호

##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시장의 처를 통하여 직원 인사 및 승진 대가로 직급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특채 및 승진인사에서도 금품이 오간 비리가 확인되고, 건설사에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내사중지  
※ 통보일자 : 2010. 3. 2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0호

##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업체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건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허위 작성하여 차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편취한 혐의가 일부확인 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함  
※ 조사결과 통보 : 2010. 12. 2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3호

**고속정 발전기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8.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관급장비로 납품하면서 재료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십억 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재료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감독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79억 5,158만 원 편취 혐의로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6명  
※ 통보일자 : 2009. 11. 11.
- ○○청 조사결과, 부당이득금 7억 8,500만 원 환수, 입찰제한 6월  
※ 통보일자 : 2010. 8.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1호

## 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2분과위원회(2009. 8.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국립 ○○대학교에서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준공기한 내 완공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준공확인을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시행사가 내야 할 지체상금을 면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허위로 준공 확인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교과부 조사결과,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자 4명 경고, 시행사에 지체상금 246만 원 부과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10. 5.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2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8.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교과부 조사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 미지급 및 공동경비 부적적 조성 등 사실이 확인되어 경고 및 미지급 인건비 지급조치

※ 통보일자 : 2010. 4. 1.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8호

## 도로 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주문한 2008년 관내 제3차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업체로서, 공사 물량 중 일부 가드레일의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준공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국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물량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공사비 1억원 상당의 편취혐의가 확인되어 관련자 9명, 관련 건설사 3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3. 3.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처분기관에 감리원 등 업무정지 조치  
※ 통보일자 : 2009. 10. 19.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1호

**표고목 구입비 등 국고지원 보조금 편취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민지원사업인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량 표고목을 저가로 납품받거나 산양삼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수사 및 감독기관의 조사를 통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국고보조금 1억 원 편취 등의 혐의로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3. 2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2호

##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군 보조사업 담당자는 재첩 도소매업자와 공모하여 재첩 종패 방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산 재첩 종패를 납품받아 방류하여야 함에도 값싼 중국산 폐 재첩을 사들여 물가에 유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재첩의 납품 물량 및 상태 확인, 실제 방류 여부 등에 대한 검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여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 허위공문서 작성 및 중국산 폐 재첩 도입경로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과 ○○북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재첩 납품업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조사결과 통보 : 2010. 7. 6.
- ○○북도 조사결과,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 계획  
※ 조사결과 통보 : 2010. 7. 2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6호

## 폐기물처리 용역비 허위청구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폐기물량을 부풀리고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폐기물 처리물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수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용역비 13억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입건  
※ 조사결과 통보 : 2010. 8. 2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7호

##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주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제안서에 학교 측 지원금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과제를 수주하고,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착복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의 방법으로 지원예산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0. 3. 31.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연구비 부당집행 혐의로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0. 2. 1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8호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로서, 담당자는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인이 실제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사비로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예산을 횡령한 부패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조합 법인을 자격이 미달함에도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횡령에 대한 세부적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보조사업 관련하여 감독소홀 공무원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 조사결과 통보 : 2010. 10. 12.

- 경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의 사망으로 내사종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2호

##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0.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공사에서는 당해 공사가 2008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던 고정상여금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2007년도 고정 상여금을 지급받은 재직자에게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추가로 지급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퇴직한 직원 570명에게 약 82억 8,000만 원의 성과급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도개선 하도록 통보

※ 조사결과 통보 : 2010. 12. 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3호

##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1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본인 소유의 법인 주식을 친족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납부고지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추정세액이 전액 납부되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3. 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4호

## 공무원의 조세포탈 은폐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0. 1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주) 대표가 장남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장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3남에 증여하고 증여세 회피를 위해 법인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피신고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 탈세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관련서류 은폐 등의 개연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3. 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7호

##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의 용역관련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수집기록물 정리 및 목록 입력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위 용역사업에 포함된 기록물 소독용역 계약을 피신고자가 잘 아는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4. 2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8호

## 공무원들의 무허가 축사 불법추인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시 관내 2필지에 소재하는 축사 및 관리사 모두가 무허가 건축물이고 농지법 등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서도 무허가 건축물을 부당 추인하여 양성화 시켜주고 담당경찰서에도 축소 고발하여 특혜를 준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처리 부적절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2. 12.
- ○○남도 조사결과,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0. 1. 1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0호

**정부출연 연구과제 출연금 횡령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정부출연과제를 연구·개발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사용 중인 각종 시약이나 장비를 연구를 위해 새로 구매한 것처럼 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장비를 연구 산물인 것처럼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매하는 등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중지  
※ 통보일자 : 2010. 6. 2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1호

### 세무공무원들의 주식 변칙증여관련 탈세 사실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지방국세청에서는 산하 ○○세무서에서 지역 버스사업체 대표가 제출한 양도신고서가 매매가 아닌 특수 관계인들 간의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요청이 있었고,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탈세 제보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증여세 탈세사실을 묵인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허위 공문서를 통지하여 탈세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0. 3. 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2호

〇〇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보조금 지원으로 새송이 버섯재배사 증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9.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3호

##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암 발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단가가 낮은 진동발파 공법으로 공시하였음에도 시공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무진동 암 파쇄 공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들이 준공검사원 등을 허위 작성하여 공사비를 편취하는 등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공사비 약 8,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0. 3. 1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5호

**도로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반입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토건 대표로서, 도로건설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를 반입하면서 공사현장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육사(陸沙)를 반입하여 공사하고도, 원거리 골재채취장에서 해사(海沙)를 반입하여 공사한 것처럼 발주청을 속여 수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공사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와 감독관청의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무죄 판결 받은 내용과 중복된 건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0. 2. 25.
-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감액조치  
※ 통보일자 : 2010. 1.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6호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 비리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중간처리업자 및 시설변경허가 담당공무원들로서, 노후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교체하면서 소각로 교체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평가절차 없이 소각로를 교체하여 의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인정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와 업무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환경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동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각하
- 환경부 조사결과, 폐기물 과다 위탁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별도의 행정조치 없음
- ※ 통보일자 : 2009. 12. 16.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7호

## 정부지원 연구과제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서, 실제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원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허위 연구기자재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실적을 부풀려 연구비를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 1억 6,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송치

※ 조사결과 통보 : 2010. 7. 1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8호

## 지역SW특화육성 지원 사업 관련 예산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IT융합 서비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부당하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

※ 조사결과 통보 : 2011. 1.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46호

**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  
교부·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차명으로 보유한 자신의 산지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서 매매 차익을 취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신자인 피신고자 B와 C에게 산양삼 보조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군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1,000만 원 지가상승 이익을 취하고 보조금 2억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3명

※ 조사결과 통보 : 2011. 2. 7.

- ○○남도 조사결과 미통보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47호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지원금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2.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임의사용과 근로확인서 허위 작성 및 이중 등록을 통하여 급여를 횡령하고, 참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부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 신고자가 근로확인서 허위 작성 및 이중 등록을 통하여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사와 감독 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과 노동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약 2,900만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0. 4. 2.
-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약정 해지 및 사업제한 조치 2년, 부정수급액 약 700만원 환수  
※ 통보일자 : 2010. 2.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48호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산양삼 재배 보조사업자들로서,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국고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군청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남도로 이첩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보조금 약 1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여 1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0. 11. 1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49호

###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사실을 묵인하고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차권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임차권 불법양도를 조장한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사와 감독 기관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및 국토해양부 통보

####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부동산업자 및 임차인 등 32명을 약식기소  
※통보일자 : 2010. 9. 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제2절 신고자 보호



## 1. 의안개요

- 「○군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 건과 관련하여 요구인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반자는 위원회법 제62조 및 제67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의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의·의결

## 2. 심의내용

- 위반자는 요구인이 신고자임을 미인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반자가 부임 후 받은 업무보고내용, 행동강령 위반자인 영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결정시 보고받은 내용, 본 사건의 성격과 인사상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요구인이 신고자임을 몰랐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위반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요구인에게 “견책”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은 위원회법 제62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 3. 의결결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

제2010-182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건 관련  
신분 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

전원위원회(2010. 12.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관련된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건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원회 법 제64조제1항, 제67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피신고자 및 요구인의 소속 기업에 그 신분을 공개한 위반자 등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로 심의·의결

**2. 심의내용**

-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분 비공개 의무 위반자 징계요구에 대해 위반자들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고 신고내용을 유출한 행위, 신고내용을 인쇄하여 요구인의 소속기업 관련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 등을 위원회법 제64조제1항의 신분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 4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 부처에 요구함

**3. 의결결과**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

## 1. 의안개요

-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신고」와 관련된 신분보장조치요구 건에 대하여 ○○부장관에게 위원회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패행위의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할 요구인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심의·의결

##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이 ○○ 소속 부대 및 동료 군무원 등에게 전파된 점 등에 비추어 요구인이 의원면직 전과 동일하게 소속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동일 직급·직렬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3. 의결결과

○○부장관에게 의원면직할 요구인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



#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6. 10.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180,00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조의금·축의금·전별금 등으로 약 4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18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3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43호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 매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5. 25.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19.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횡령한 45,000,000원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에서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후, 연구를 위해 대형 변압기 5대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가 종료된 후 위 변압기 중 1대를 시험에 참여하였던 업체에 무상기증한다고 하고서, 변압기에 내장된 규소강판 등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45,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4대도 매각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횡령한 45,000,00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9,0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44호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19.)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5.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 14.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50,166,890원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이 자진 상환된 구상채권을 회수요원들의 회수활동에 따른 구상권 회수금인 양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수요원들에게 회수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일반관리직원인 ○○○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회식 및 료살롱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편취한 50,166,89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10,03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45호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19.)

보상심의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11. 5.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5.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60,466,520원에 대한 환수 결정과 38,648,160원의 환수가 있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마을이장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18,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회장이 ‘경로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13,000,000원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 60,466,520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되었고 38,648,1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및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2,09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7. 24. 「상수도관 납품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 5.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611,207,446원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 등이 상수도용 주철관 및 강관 등을 생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KS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하여 납품하고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611,207,446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87,12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47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5. 25.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17.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1,830,860원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오전에만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출장을 신청한 후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며 전혀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 1,830,8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6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9. 1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17.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45,864,920원에 대한 환수결정과 30,862,920원의 환수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〇〇의원을 운영하면서 신고자가 위 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요양급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45,864,920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되었고 30,862,92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9,17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49호	「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11. 28. 「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비리」건을 신고한 후 2010. 1. 11.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시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설계 및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468,950,000원의 비용이 절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주)○○은 위 피신고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처럼 감리서류를 제출하여 피신고자로 하여금 이윤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설계 및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 468,950,000원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71,65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50호

##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4. 19.)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4. 8. 9.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건을 신고한 후 2010. 2. 1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수수한 뇌물 30,570,530원에 대한 법원의 추정판결과 2,000,000원의 납부가 있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피신고자는 서무업무와 지출관의 직을 맡은 회계공무원이고, 신청인은 ○○를 맡아하던 자로서, 피신고자가 신청인에게 ○○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와 함께 그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허위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뇌물수수 및 향응 접대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수수한 뇌물 30,570,530원에 대한 법원의 추정판결과 2,000,000원의 납부가 있어, 위 추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2,13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84호

「○○법인 대표이사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4. 2. 「○○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5. 2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0,000,000원이 전액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2008년 ○○군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조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사업실적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도 허위라는 내용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0,000,000원이 전액 환수된 바,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8,0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85호

##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5. 26.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건을 신고한 후 2010. 5. 26.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10,000,000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시가 ‘퇴직예정공무원 부부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로연수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퇴직예정 공무원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까지 해외여행을 보내면서 2억여 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10,000,000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5,34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86호

### 「임산물 보조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2. 19. 「임산물 보조사업비 횡령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5. 2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4,400,000원이 전액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단기 임산물 재배보조사업’에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존 설치되어 있던 ○○를 신규 설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재배하던 종자 및 묘를 사업지에 이식한 후 신규 구입·이식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보조금 44,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4,400,000원이 전액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6,21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2. 2. 「〇〇시설 공사납품 관련 비리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5. 2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109,312,000원이 감액수정계약 되는 등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2008년 9월 발주하여 (유)〇〇이 낙찰 받은 〇〇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특정업체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주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109,312,000원이 감액 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21,30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88호	「○○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1. 14. 「○○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4. 2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및 이자 153,479,420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피신고자들이 2007년 ○○군으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과 공모하여 정부보조금 3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및 이자 153,479,42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7,48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89호

## 「○○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3. 5. 「○○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4. 2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20,713,950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피신고자들이 2008년도에 ○○군 ○○기술센터로부터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중 비닐 하우스 및 환풍기 설치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약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20,713,95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4,14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90호	「○○연구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6.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3. 10. 「○○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5. 3.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하여 추가로 원금 및 이자 346,584,720 원 중 189,857,770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분야 연구소 이사장 등이 ‘○○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과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보조금 중 189,857,77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43,59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2. 5. 「임야 및 농지에 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건을 신고한 후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조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고의는 없고 단순 직무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신고내용이 고의에 의한 부패행위로 입증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한바, 이 신고내용의 경우와 같은 과실에 의한 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2009. 2. 5. ○○시에서 승인,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신고자들이 ○○설립신청지가 농림지역내 임야(보전 산지)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100,000,000원 상당을 감면하여 주는 등 ○○설립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가 부패행위의 고의가 없고, ‘단순한 직무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의 신고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신청은 이유 없음

제2010-131호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납품대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9. 2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4. 28.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납품대금 편취」건을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86,779,55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산업 대표이사가 ○○구청장이 발주한 사업에 관급자재인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톤수를 조작한 계량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조경석 납품대금을 과다지급 받아 2억~3억여원을 부당 착복하였으며, 설계도면상과 다른 규격의 조경석을 사용하여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한 제거된 돌을 다시 사용하는 등으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86,779,550원이 환수되었으며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1,76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132호

##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9. 27.)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5. 7.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1. 1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786,399,100원이 환수되고 계약변경을 통해 625,654,424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 (주)○○가 ○○에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원가를 제출하여 그 차액을 편취,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786,399,100원이 환수되고 계약변경을 통해 625,654,424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67,68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203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2. 11.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11. 10.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64,259,20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 ○○ 등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해 오면서 매년 ○○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담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편취한 64,259,200원이 환수된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8,99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6. 13.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11. 22.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총 46,253,260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복지관 관장 ○○○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무료급식 사업 및 복지관 내에 위치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았으며 ○○ 노인요양센터의 수용인원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추가로 수용하고 1인당 약100만원의 입소비용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총 46,253,260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9,25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205호

## 「출장비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문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10. 1. 19.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10. 9. 15.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총 33,640,000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에서 일하면서 ○○○등이 실제로 출장을 전혀 가지 않음에도 매월 10여만원씩 출장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총 33,640,000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6,72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206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10. 9.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1. 26.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총 15,040,000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컨설팅이 2006년경부터 한국○○○○공단의 평생 능력개발사업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부풀려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 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를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신고한 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지원비 15,040,000원이 환수된 바,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3,00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0-208호

「○○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8. 25. 「○○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 15.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총 1,525,187,687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 (주)○○가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 받고 연구용 ○○사용량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차액 2,463,904,892원을 과다수령하여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과,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14억4,600만원을 횡령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1억2,8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개발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1억2,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 3개의 국책과제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인하여 총 1,525,187,687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78,51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2010. 9. 27. 제9차 전원위원회의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건」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인이 2010. 11. 2. 보상대상가액에 가산금을 포함시켜야 하며, 불법행위 가담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함

## 2. 심의내용

- 가산금은 금전적인 제재로서 행정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여 국고를 증대시킨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신고서에 근무기간 중 피신고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고속잠수정 제작의 이행실무당사자로서 허위계산서의 주문과 그 대가의 유상사급조치를 전담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상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타당함

## 3.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포상금 지급



제2010-209호

##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8. 20. 「공사직원의 공공임대 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업자들과 임차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승인을 받았고 ○○공사 직원들이 묵인하는 대가로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동산업자들이 임대아파트 한 채당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재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각 광역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임차권 불법양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가 밝혀지고 제도 개선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20,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0호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7. 8. 21.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부패행위 의혹」건을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용역공사가 계약된 대로 작업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작업된 것으로 허위 처리하고 수주업체에 계약금액이 그대로 지불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고 계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처리한 것은 ○○공사 내 실력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거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2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신고의 정확성 및 구체성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함

3. 의결결과

금 3,5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1호

##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7. 11. 6.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건을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사에서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주한 (주) ○○대표이사로서, ○○청에서 발주한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사업에 타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항목 중 중요한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이 불가능 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을 수주하고, 동 사업비 중 5억 1,900만원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2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2천만원의 부과처분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2호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5. 3.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뇌물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구청 직원으로 ○○구청이 발주하고 (주)○○에서 시공하는 하수관 개량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08. 3. 20. (주)○○ 사장과 상무에게 원활한 공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현장소장을 통해 이를 수수하였으며 같은 해 (주)○○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것을 강요하여 수용하게 하고 이를 명목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음을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고 유사 부패행위 예방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5. 1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횡령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승인을 받은 후, 1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6,944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에서 이전부터 ○○을 제조해 온 장애인이 아닌 피신고자의 모친 및 평소 친분 있는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실제 판매를 하지 않고 월 10여만원정도 구매토록 한 후 이를 영업실적으로 처리하고, 고용된 자들이 실제 월 3~5일 정도만 근무하였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있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4호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5. 28.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관련 비리」건을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부 물품 조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1위 업체로 (주)○○○가 결정되었음에도 2위 업체인 (주)○○을 낙찰시킬 목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검수과정에서 중고엔진을 장착한 펌프가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합격처리하였고, ○○○은 ○○컴퓨터로부터 대가를 받고 ○○에서 입찰공고한 각 건의 낙찰업체에 ○○컴퓨터 제품을 납품하도록 지시,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그 외 입찰담당자들도 공모하여 특정규격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 이익을 준 의혹 등을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5호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7. 28.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건을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출장명령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검토하여본 결과 내부결재문서와 출장명령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구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9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6호

## 「정보보조금 부당지급」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4. 18. 「정보보조금 부당지급」건을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정보보조금 사업인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없이 정보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총 사업비 3억원(자부담 50%)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정보보조금 1억5천만원을 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정산서류에 허위사실이 많았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가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2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나, 신고 이전에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함

### 3. 의결결과

금 3,5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7호

## 「○○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12. 16. 「○○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관리공단이 창단 시, ○○시장의 인척 4명, ○○체육회 국장의 인척 3명, ○○조합장의 아들 등으로 직원이 구성되어있고, 창단 이후 지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직원채용을 하고 있기에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이나 비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으며 최근에도 ○○○ 전 이사장의 아들이 입사하였으므로 조직 내 만연한 인사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관리공단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0-218호

「○○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0. 12.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5. 14. 「○○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대학교 조교수로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 등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 명의의 인건비 지급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들이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연구실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한 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소속 기관의 ‘불문경고’ 처분 및 인건비 지급·관리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 제4절 기 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1. 의안개요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 수행에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잦은 비윤리적 행위로 주민 불신 확산
-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출직의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 이에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한 직무 수행으로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 차별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분리 제정·시행 필요

## 2. 심의내용

-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안 제2조)
-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행위기준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3. 의결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의결

제2010-18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제2차 전원위원회(2010. 2.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2009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결과 비위면직자인 A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를 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

### 2. 심의내용

- 권익위원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 A의 경우 ○○시 ○○구에 재직시 ○○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기금 계좌에서 공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면직된 후, 공직유관단체인 ○○공사에 직장보험 가입대상자로 근무하는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의 재직 당시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

### 3. 의결결과

심의결과 취업제한 위반자에 해당하여 A의 재직 당시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

### 4. 비고

## 1. 의안개요

- 2010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결과 비위면직자인 A와 B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

## 2. 심의내용

- 권익위원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 A의 경우 OO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면직된 후 OO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였고, B는 OO연구소에 근무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와 B의 재직 당시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

## 3. 의결결과

심의결과 취업제한 위반자에 해당하여 A와 B의 재직 당시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

## 4. 비고

제13차 제1분과위원회검토(분과2010-74호 '10.8.6)



# 제2장 보고 및 의결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제1차 2010. 1. 18.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0호	제2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심사과
제2010-11호	제23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심사과
제2010-12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심사과

### 제2차 2010. 2. 22.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8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심사기획과
제2010-19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보호보상과
제2010-20호	제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1호	제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2호	제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3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3차 2010. 3. 15.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28호	제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9호	제3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4차 2010. 4. 19.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38호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건 관련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보호보상과
제2010-42호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3호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5호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6호	상수도관 납품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7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8호	○○의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49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50호	회계직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51호	제4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52호	제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53호	제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54호	제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55호	제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0-56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5차 2010. 5. 17.**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67호	제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68호	제7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69호	제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70호	제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행동강령과
제2010-71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6차 2010. 6. 21.**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84호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85호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86호	임산물 보조사업비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87호	안개차단시설공사 납품 관련 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88호	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89호	농업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90호	국책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91호	제8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92호	제9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93호	제9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94호	제10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95호	제10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96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7차 2010. 7. 19.**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05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행동강령과
제2010-107호	제1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08호	제1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09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10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8차 2010. 8. 23.**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14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심사기획과
제2010-117호	제1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18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19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9차 2010. 9. 27.**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30호	임야 및 농지에 대한 위법한 공장신설 승인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131호	하천공사 관련 관급자재 납품대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132호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133호	제1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34호	제1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35호	제1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36호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37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0차 2010. 10. 18.**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48호	제1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49호	제1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50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1차 2010. 11. 15.**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55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건 관련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	보호보상과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65호	제14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66호	제19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67호	제1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행동강령과
제2010-168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69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행동강령과

**제12차 2010. 12. 6.**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82호	공무원행동강령 신고건 관련 신분비공개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보호보상과
제2010-186호	제2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187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3차 2010. 12. 20.**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198호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신고 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보호보상과
제2010-203호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04호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05호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0-206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07호	정부 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08호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09호	공사 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목인 부패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0호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부패행위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1호	매립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2호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뇌물수수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3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4호	국제지원사업 물품 조달 관련 비리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5호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6호	정부보조금 부당 지급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7호	시설관리공단 인사 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8호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0-219호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결정사항 이의신청)	보호보상과
제2010-220호	제1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21호	제2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0-222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4.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5.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등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시행 2010.7.26.] [법률 제9968호, 2010.1.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적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의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턴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삭제 〈2009.1.7〉
  - ⑤ 삭제 〈2009.1.7〉
  - ⑥ 삭제 〈2009.1.7〉
  - ⑦ 삭제 〈2009.1.7〉
  - ⑧ 삭제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항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의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고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고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

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에 따른 신분보호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17]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231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 불이첩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또는 신고자가 상담을 요구한 현지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이를 종합 관리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

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록)** 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2항의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심사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심사기획과나 부패심사과의 담당직원은 신고사항 처리 등의 각 단계마다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나 부패심사과장 등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부패심사과장 등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인계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부패심사과장에게 배정하고 해당 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인계받은 부패심사과장은 이를 전담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심위원 지정)** 부패심사과장은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그 밖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중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부패심사과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호보상과장과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부패심사과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확인)** ① 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패심사과장이나 담당직원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4조(신고의 보완)**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중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에서 이를 접수하여 제5조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중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부패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그 이외의 신고사항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중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3.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이첩”. 다만, 이 예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종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57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3호의 신고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심사의견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영 제57조제1항이나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이나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

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5조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가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패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사항의 고발)**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첩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1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 부패심사과장은 고발·이첩·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영 제57조제4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은 심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부패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재조사 필요성 심사)**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9조(재조사 요구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부패심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조사요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1조(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공공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① “공공기관 송부” 처리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공공기관에서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즉시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고발사항 수사결과 처리

**제33조(수사결과와 통보 접수)**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신청서 작성)**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정신청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사실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재정신청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신청의 취소)**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8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 부패심사과장은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부패심사과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제1항에 따른 결정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부패심사과장은 영 제69조에 따라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장 신고기록의 보존

**제42조(신고기록의 보존)**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즉시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그 밖에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이첩 또는 불이첩된 사건 중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보존절차)** ① 부패심사과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 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그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제54조(기록물의 폐기)** 운영지원과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0호 「신고사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0호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행한 부패행위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2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에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 상담)** ① 심사기획과나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록)** ①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으로 관리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추가하여 관리한다.

②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담당조사관은 신고사항 처리 등의 각 단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인계)**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행동강령과에 배정하고 해당 신고기록을 인계한다.

**제9조(주심위원 지정)**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 중 주심위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경우
2. 피신고자가 3급 이상(또는 상당)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공직자인 경우
3. 피신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4. 금품등의 수수 액수나 부당이득의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행위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건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의 확인·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진술 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확인·조사)**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처리의견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1조(종결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9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위원에게 보고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제22조(기관 송부 처리의견 제시)** 행동강령과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 송부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상정)**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4조(신고사건의 처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송부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송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5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송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22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사항을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 할 수 있다.

**제30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적발사건의 처리)** 위원회의 행동강령 이행·운영실태 조사 또는 점검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이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이 예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장 신고기록의 보존 등

**제32조(신고기록의 보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33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기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 중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5조(이관·보존절차)**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2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고 보존 신고기록에 대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와 체계적인 보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 제5장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

**제38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신고자,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심사기획과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기록의 보존여부를 확인하여 이관 전인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열람·등사신청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허가여부의 결정)**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열람·등사의 제한)**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행동강령과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2조(신고기록의 대출·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관련 문서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반환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기록물의 폐기)** 운영지원과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폐기나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7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행한 행동강령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3호, 2009.6.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2009.8.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9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 받은 신청서 등은 이 예규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 ③ 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장 포상금 및 보상금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과 그 증빙자료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대표자의 선정)** ① 영 제73조에 따라 보호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보완)** ①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신청 취소를 접수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해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서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24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 제4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등)**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보호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매 분기 말 첫째 월요일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다만, 보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확인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 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결조정)** 보상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5장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5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제6장 보칙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7조(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 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지급추천서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 5년

2. 포상금 지급추천서 관리부나 보상금 지급신청 관리부 : 10년

3. 보상위원회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지급결정서 등 : 영구보존

**제48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20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 5. 28.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 1.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인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 이상인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바.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비고 : 1.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2)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바.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 ※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4)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7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지는 등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기타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 시책 도입,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 6)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액기준	유 형
2억원 이하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자진신고의 동기·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2. 파면·해임·해고·정직 및 감봉 등으로 인한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조치
3. 공직자인 신고자에 대한 전직, 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
4.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시정조치 또는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제4조(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2항·제3항,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요구인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인(이하 “요구인”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보완)** ① 신고자나 협조자가 제출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취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내용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조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검토한 후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 경우에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여부
2.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4. 신고와 관련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제14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보상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고,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원상회복, 징계보류, 업무부여, 급여보전조치,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신고자 등이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조사 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책임의 감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⑦ 보호보상과장은 조사결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등”이라 한다)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 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감면되었거나 요구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5조(결정결과의 통보 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하거나 기각·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신분보장조치등의 불이행 처리)** ①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이행을 촉구한다.

**제17조(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① 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인사에 관한 조치는 요구인의 직종과 직급 등을 감안할 것
3.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요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 및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4. 특별한 자격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직의 경우에는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것

② 위원회의 인사에 관한 조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보를 덧붙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인사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인이 우선적으로 인사규계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간·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징계요구)** ① 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징계요구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보를 덧붙여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6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조회 및 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 불응자 및 조사 불응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요구 불이행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 ③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행위,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불이행 사실
  2.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3. 조사담당자 및 요구인의 의견 등
-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제20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자는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실
4.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일용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2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위원회 직원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직무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의 접수 등)** ①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나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확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④ 확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신분공개여부 등의 조사)** ① 제22조제1항의 확인요구서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분공개 여부 및 경위 등의 조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신분공개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장 신변보호

**제25조(신변보호요구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부패행위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이나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이하 “신변보호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요구서를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변보호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변보호요구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 신변보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신변보호요구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신변보호 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조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신변보호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이 요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소하였거나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와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⑤ 보호보상과장은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긴급보호)** ① 요구인 및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
4.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신변보호를 한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신변보호대상자의 관리)**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 중인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전 신변보호 등의 조치)** ① 신고사항의 접수·처리·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 등의 특례 등) 및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를 준용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경 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보상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유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1. ~ 4. <삭제>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부과 결정 및 통지)**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31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에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33조(이의제기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이의제기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이의제기서의 처리)** ①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부과 의결서 정보 및 과태료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자보호 조사문서 편철)**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보호 요구 및 조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관리한다.

② 과태료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36조(보호상담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호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신고자 보호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7.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91조제1항”을 “영 제91조”로 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4. 21.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8조 본문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2010. 6월말)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위원장	이재오 (李在五)	· 15·16·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위원	박인제 (朴仁濟)	· 변호사(서원합동법률사무소) · 청렴위 비상임위원 · 대한변협 공보이사	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	이영근 (李榮根)	· 청렴위 정책기획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부위원장
위원	김필규 (金弼圭)	· 변호사(김필규법률사무소) · 대구지검 형사부장 ·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위원장
위원	이권상 (李權相)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 대비실 비서관	상임위원
위원	이재충 (李在忠)	· 충북 행정부지사 · 행자부 지방자치국장 · 행자부 의정관리국장	상임위원
위원	홍현선 (洪炫善)	· 청렴위 홍보협력단장 · 청렴위 제도개선심의관 · 반부패특위 기획평가팀장	상임위원
위원	강정혜 (姜貞嘒)	· 서울시립대 교수 ·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위원	황현주 (黃玄周)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원	박정훈 (朴正勳)	· 서울대 교수 ·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위원	송방용 (宋邦鏞)	· 여의도포교원 원장 · 불교신문 논설위원	
위원	조준형 (趙俊炯)	·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변호사 · 서울지검, 인천지검 검사	
위원	이재화 (李在華)	· 낮은합동 법률사무소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원	
위원	이순창 (李純章)	· 서울 연신교회 담임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서기)	
위원	김용미 (金用美)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0. 12월말)

구분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이영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우경종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당연직
위원	이선숙	· 변호사	위촉직(법률전문가)
위원	김태주	· 변호사	위촉직(법률전문가)
위원	이기화	· 공인회계사	위촉직(회계전문가)
위원	김원태	· 감정평가사	위촉직(감정평가전문가)
위원	김진수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촉직(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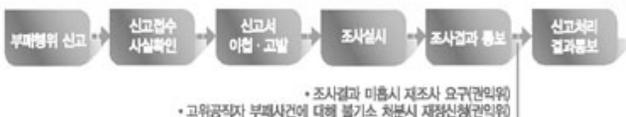
## 부패행위 신고 안내

# 공직자의 부패행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 부패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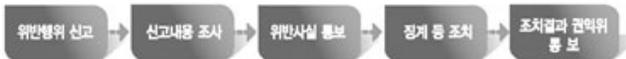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감묘,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가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행동강령 위반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의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부패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고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안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 110  
**공익신고자 보호**

##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 '공익침해행위'는 어떤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 ③ 수사기관
- ④ 국민권익위원회
- ⑤ 국회의원
-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습니다.

보호 조치	신분비밀 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 계 처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li> <li>• 불이익 조치를 한 자</li> </ul>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li> <li>•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li> </ul>
	2년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li> <li>•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li> </ul>
	1년이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li> <li>•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li> </ul>

## 보호는 이렇게 해요!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 마트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입 억원의 부당이익을 치하였다.
- 이에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였다.
-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에 해당

※ 「식품위생법」 제94조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원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 분야

#####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의료법 등 45개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 안전 분야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등 56개



#### 소비자 이익 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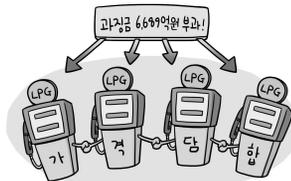


#### 공정 경쟁 분야

#####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법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 이용안내

- 방 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신고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 우 편** | (120-705)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 전 화** | 부패행위 신고전화 1398  
고충민원 · 행정심판 상담전화 1588-1517
- 팩 스** | 부패 · 공익신고 02)360-3551  
고충민원 02)360-2710
- 인터넷** | 부패 · 공익신고 [www.acrc.go.kr](http://www.acrc.go.kr)  
고충민원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2010년도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제9집)

---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발행일 : 2011년 12월

인 쇄 : (사)한국장애인 e-work협회

Tel. 02)2272-0307 Fax. 02)2272-0317

---

본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의결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심사기획과 ☎ 02)360-6665 Fax 02)360-355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